

대 구 지 방 법 원

제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3나19074 대여금

원고, 피항소인 ○○○

피고, 항소인 ●●●

제 1 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구미시법원 2012. 6. 21. 선고 2012가소
3603 판결

변 론 종 결 2014. 9. 26.

판 결 선 고 2014. 10. 17.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6,715,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1. 12. 26.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사건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 갑 제9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11. 12. 20. 피고 및 피고의 남편 ◇◇◇, 피고의 모 ◆◆◆를 상대로 위 청구취지 기재 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같은 날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구미시법원 2011차2159호 지급명령을 받았다.

(2) 위 지급명령정본은 ◇◇◇에게 2012. 1. 6. "구미시 선산읍 선산중앙로6길 ×××"로 송달되어¹⁾ 2012. 1. 21. 확정되었고, ◆◆◆에게는 2012. 2. 7. 송달되어 2012. 2. 22. 확정되었다.

(3) 원고는 위 지급명령 신청 당시 피고의 주소를 "구미시 선산읍 이문리 ★★★"으로 기재하였으나 위 지급명령정본이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아 법원으로부터 주소보

1) 그 수령인은 배우자(동거인)인 피고이다.

정명령이 내려지자 피고의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여 그 주소를 "구미시 선산읍 선산중앙로6길 □□□"로 보정하였다. 그런데 주소불명을 이유로 위 주소로도 지급명령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되지 아니하자 원고는 소제기신청을 하였다.

(4) 제1심 법원은 2012. 5. 3. 피고에 대한 송달을 공시송달로 할 것을 명하여 소장 부분 및 소송안내서, 각 변론기일통지서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후, 2012. 5. 31. 1차 변론기일, 2012. 6. 21. 2차 변론기일을 피고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진행하여 변론을 종결하고 곧바로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의 판결정본은 2012. 7. 2. 피고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2012. 7. 3. 그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5) 한편 원고는 제1심 판결이 확정되자 2013. 2. 1. 피고를 상대로 제1심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카명226호로 재산명시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3. 2. 4. 재산명시결정(이하 '이 사건 재산명시결정'이라 한다)을 하여 그 결정등본을 피고에게 송달하여 피고가 2013. 2. 8. 이를 수령하였다.

(6) 또한 위 법원은 2013. 2. 22. 피고에게 재산명시기일출석요구서, 재산목록양식 및 안내서를 송달하여, 피고가 2013. 2. 26. 이를 수령하였다.

(7) 피고는 2013. 3. 11. 재산명시기일에 불출석하여, 대구지방법원 2013정명105호로 감치재판절차 개시결정을 받고 2013. 4. 15. 그 기일에 출석하여, 같은 날 재산명시 의무를 이행하였다.

(8) 그 후 피고는 2013. 10. 23. 이 사건 소송기록 열람 및 복사신청을 하여 제1심 판결을 확인한 후, 2013. 10. 30. 제1심 법원에 이 사건 추완항소장을 제출하였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소송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어 이 사건 소 제기 사

실조차 알지 못하고 있다가 2013. 10. 23. 이 사건 소송기록을 열람하여 확인한 후에야 이 사건 소 제기 사실 및 제1심 판결 선고 사실을 알게 되어 그로부터 2주일 이내인 같은 달 30. 이 사건 추완항소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여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다. 판단

(1) 소장 부분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는바,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4다8005 판결 참조), 당사자가 당해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알았고 사회통념상 그 경위에 대하여 당연히 알아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위에 대하여 알아보는 데 통상 소요되는 시간이 경과한 때에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추인하여 그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소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43533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소장부분과

판결정본 등이 피고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여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 앞서 본 법리와 기초사실 및 증거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재산명시제도는 확정된 집행권원에 터잡아 강제집행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점, ② 피고가 2013. 2. 6. 수령한 이 사건 재산명시결정등본에는 원고가 채권자로, 피고가 채무자로 기재되어 있고, 집행권원으로 이 사건 제1심 판결의 사건번호와 사건명이 기재되어 있는 점, ③ 피고는 위와 같은 재산명시결정등본 외에도 재산명시기일출석요구서, 재산목록 및 안내서를 송달받아 확정판결에 기하여 재산명시기일이 진행되는 등의 위 서류에 기재된 유의사항 등의 내용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는 제1차 재산명시기일인 2013. 3. 11.에 불출석함으로 인하여 감치재판절차 개시결정을 받고 2013. 4. 15. 법원에 출석하여 판사로부터 선서의 취지를 고지 받고 허위의 재산목록 작성 제출에 대한 벌을 경고 받은 다음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선서한 점, ⑤ 피고는 2013. 4. 15. 법원 출석 당시 이 사건 제1심이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구미시법원에서 진행된 것이어서 제1심 판결문을 확인해보지 못하여, 당시 제1심 판결이 있었다거나 그 판결이 공시송달로 송달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와 같은 재산명시결정등본 등의 내용 및 재산명시기일의 절차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늦어도 재산명시기일인 2013. 4. 15.경에는 제1심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알았다 할 것이고, 제1심 판결이 선고된 경위에 대하여 알아보는 것이 사회통념상 당연하다 할 것이어서 피고가 그 경위를 알아보지 아니한 것에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는 점, ⑥ 피고는 ◇◇◇에 대한 위 지급명령정보를 수령하였으므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도 지급명령을 신청한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제1심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알았고 사회통념상 그 경위에 대하여 당연히 알아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늦어도 위 재산명시기일인 2013. 4. 15. 이후 피고가 제1심 판결이 선고된 경위를 알아보는데 통상 소요되는 시간이 경과한 때에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추인되어 그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소멸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그로부터 2주일이 현저히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2013. 10. 30.에서야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그 항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이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추완항소는 추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2.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의 항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영화

 판사 서희경

 판사 손승우